학원의 설립 •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(약칭: 학원법)

[시행 2023. 10. 19.] [법률 제19347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]

교육부 (평생학습지원과) 044-203-6386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7, 12, 21,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1. 7. 25., 2016. 1. 19., 2021. 3. 23., 2021. 8. 17., 2023. 4. 18.>

- 1. "학원"이란 사인(私人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(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지식・기술(기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・예능을 교습(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・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
 - 나.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
 - 다.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
 - 라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・등록・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 - 마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
 - 바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
 - 사. 「주택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 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
- 2. "교습소"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.
- 3. "개인과외교습자"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 - 나.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
- 4. "과외교습"이란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·기술·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 - 가.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
 - 나.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
 - 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
- 5. "학습자"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 - 가.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
 - 나.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
 - 다.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
- 6. "교습비등"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·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(이하 "교습비"라 한다)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(이하 "기타경비"라 한다)를 말한다.
 - 가. 학원을 설립・운영하는 자(이하 "학원설립・운영자"라 한다)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나.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는 자(이하 "교습자"라 한다)
- 다. 개인과외교습자

- 제2조의2(학원의 종류)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7. 25.>
 - 1. 학교교과교습학원: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
 - 나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. 다만,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2. 평생직업교육학원 :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
 -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, 12, 21.]

제3조(교원의 과외교습 제한)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, 「고등교육법」제2조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(「고등교육법」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)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2. 1. 2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4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 ① 학원설립·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,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,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 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1. 7. 25.>
 -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,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 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3. 28., 2011. 7. 25.>
 - ③ 학원설립・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・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・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・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・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12. 20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5조(교육환경의 정화 등) ①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·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(이하 "유해업소"라한다)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1. 7. 25.>
 -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·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7. 25.>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「식품위생법」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・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)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.<개정 2011. 7. 25., 2023. 4. 18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1. 7. 25.>
- 1.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
- 2.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

제5조의2(감염병에 관한 조치) 학원설립·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8.]

- 제6조(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) ① 학원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, 교습과정, 강사명단, 교습비등, 시설·설비 등을 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, 강사명단, 교습비등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 7. 25.>
 -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 -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5. 29.>
 - ④ 학원설립・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5. 29.>
 - ⑤ 학원설립·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5. 29.>
 -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신설 2016. 5. 29.>
 - 1.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의 설립·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
 - 2.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· 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**제7조(조건부 설립등록)**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・운영의 등록을 수리(受理)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・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8조(시설기준)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9조(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 • 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<개정 2016. 5. 29., 2018. 6. 12.>

- 1.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
- 6.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 6의2.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
- 7.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- ② 학원설립·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8. 6. 12.>
- 1. 제1항제4호의 경우
- 2.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[2018. 6. 12. 법률 제15625호에 의하여 2014. 1. 28., 2015. 5. 28.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]

- **제10조(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)** ① 학원설립・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(休院)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12. 19.>
 -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·운영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 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<신설 2017. 12. 19.>
 -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·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·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 12. 19.>
 - ④ 학원설립·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.<신설 2023. 4. 18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1조 삭제 <1999. 1. 18.>

제12조(교습과정)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·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13조(강사 등)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 - ② 학원설립·운영자는 강사의 연령·학력·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③ 삭제<2016. 12. 20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13조의2(외국인강사의 채용) 학원설립 · 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(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0.>
 - 1. 범죄경력조회서
 - 2. 건강진단서(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)
 - 3. 학력증명서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[본조신설 2011. 7. 25.]
- [2—2220111125]
- 제14조(교습소 설립·운영의 신고 등) ①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,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, 교습과목,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·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,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, 교습과목, 교습비등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 7. 25.>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.<신설 2018. 12. 18.>
 -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8. 12. 18.>
 -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3. 3. 23., 2018. 12. 18.>
 -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7. 25., 2018. 12. 18.>
 -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7. 25., 2013. 3. 23., 2018. 12. 18.>
 -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7. 25., 2018. 12. 18.>
 - ⑧ 교습자의 자격, 교습소의 장소·시설·설비, 학습자의 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1. 7. 25., 2018. 12. 18.>
 -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(休所)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 7. 25., 2013. 3. 23., 2018. 12. 18.>
 -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.<신설 2011. 7. 25., 2013. 3. 23., 2016. 5. 29., 2018. 12. 18.>
 - ① 교육감은 교습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<신설 2017, 12, 19,, 2018, 12, 18.>
 - ②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 12. 19., 2018. 12. 18.>
 - ③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.<신설 2023. 4. 18.>

- 제14조의2(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)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, 교습과목,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(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(在籍) 중인 학생(휴학생은 제외한다)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 7. 25.>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$2018.\ 12.\ 18.$
 -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8. 12. 18.>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12. 18.>
-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,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5, 29,, 2018. 12, 18.>
-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1. 7. 25., 2013. 3. 23., 2018. 12. 18.>
-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-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(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-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.<신설 2008. 3. 28., 2016. 5. 29., 2018. 12. 18.>
-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.<신설 2016. 5. 29., 2018. 12. 18., 2021. 3. 23.>
- 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.<신설 2016. 5. 29., 2018. 12. 18.>
-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할 수 없다.<신설 2023. 4. 18.>

- 제15조(교습비등) ①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,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3. 3. 23.>
 - ②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,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.<개정 2011, 7, 25.>
 - ③ 학원설립・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・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,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・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,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7. 25., 2013. 3. 23., 2016. 5. 29.>
 - ④ 학원설립・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・게시・고지하거나, 표시・게시・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・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1. 7. 25., 2016. 5. 29.>
 - ⑤ 삭제 < 2016. 5. 29.>
 -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.<신설 2011, 7, 25,, 2016, 5, 29,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[제목개정 2011. 7. 25.]

- 제15조의2(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)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"학원"을 붙여 표시한다.
 -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"교습소"를 붙여 표시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0.]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[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<2016. 12. 20.>]

제15조의3(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) 학원설립・운영자,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・관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0.]

제15조의4(학원설립·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) 교육감은 학원설립·운영자,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0.]

- 제15조의5(정보의 공개)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, 교습과정별,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 · 군 · 구별로 분류하여 시 ·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, 위치, 교습과정, 교습과목, 정원, 교습기간,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7. 25.]

[제15조의2에서 이동 <2016. 12. 20.>]

- 제16조(지도・감독 등)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・감독을 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개정 2016. 5. 29.>
 -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・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・설비, 교습비등, 교습에 관한 사항과「도로교통법」제53조,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・설비,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설・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1. 7. 25., 2015. 2. 3., 2020. 5. 26.>
 -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개정 2011. 7. 25.>
 - ⑤ 제3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- ⑥ 교육감은 미등록 · 미신고 교습, 교습비등 초과 징수,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1, 7, 25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**제17조(행정처분)**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5. 2. 3., 2016. 5. 29., 2016. 12. 20., 2023. 4. 18.>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
 - 2.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3.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(開院)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
- 6.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
- 7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
- 8.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8의2.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
- 9.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
- 10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11. 「도로교통법」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(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(승하차를 포함한다)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
- 12. 학습자에 대한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. 다만, 학원설립·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
- 7. 25., 2016. 5. 29., 2016. 12. 20., 2023. 4. 18.>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
- 2.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
- 3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
- 4.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4의2.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
-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6. 학습자에 대한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. 다만,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7. 「도로교통법」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(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(승하차를 포함한다)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
-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.<신설 2008. 3. 28., 2011. 7. 25., 2016. 5. 29.>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
- 2.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
- 3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
- 4.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6. 학습자에 대한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<신설 2016. 5. 29.>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- 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 ① 학원설립 · 운영자,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,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>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, 반환금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1. 7. 25.>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 [제목개정 2011. 7. 25.]

- **제19조(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)**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9., 2018. 12. 18.>
 - 1.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・운영하는 경우
 - 2.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
 - 3.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
 - 4.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17. 12. 19.>
 - 1.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
 - 2.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 리는 게시문의 부착
 -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 [제목개정 2017. 12. 19.]

제20조(청문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- 1.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
- 2.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- 제2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2. 21.>
 - ② 삭제<2001. 1. 26.>
 -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・운영자,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07. 12. 21., 2016. 12. 20.>

[제목개정 2007. 12. 21.]

- **제22조(벌칙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1. 7. 25., 2016. 5. 29.>
 - 1.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자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
 - 3.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거나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하고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한 자
 - 4.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
 -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08. 3. 28., 2016. 5. 29.>
 -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08. 3. 28., 2017. 12. 19.>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08. 3.
 - 28,, 2011. 7. 25,, 2016. 5. 29,, 2016. 12. 20,, 2017. 12. 19,, 2018. 12. 18,, 2021. 3. 23.>
 - 1.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
 - 1의2.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- 3.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·학력·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
 - 3의2.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
 - 4.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
 - 5.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
 - 6. 삭제 < 2016. 5. 29.>
 - 6의2.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
 - 6의3.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
 - 7.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・게시・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・게시・고지한 자
 - 7의2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
 - 7의3.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
 - 7의4.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・관리하지 아니한 자
 - 8.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
 - 9.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・검사를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자
 - 10.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.
 - ③ 삭제<2011. 7. 25.>
 - ④ 삭제 < 2011. 7. 25.>
 - ⑤ 삭제<2011. 7. 25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24조(적용의 배제)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, 제5조, 제7조, 제8조 및 제 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
[본조신설 2011. 7. 25.]

부칙 <제19347호,2023. 4. 18.>

- **제1조**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폐원신고, 폐소신고 및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4항, 제14조제13항 및 제14조의 2제1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교습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